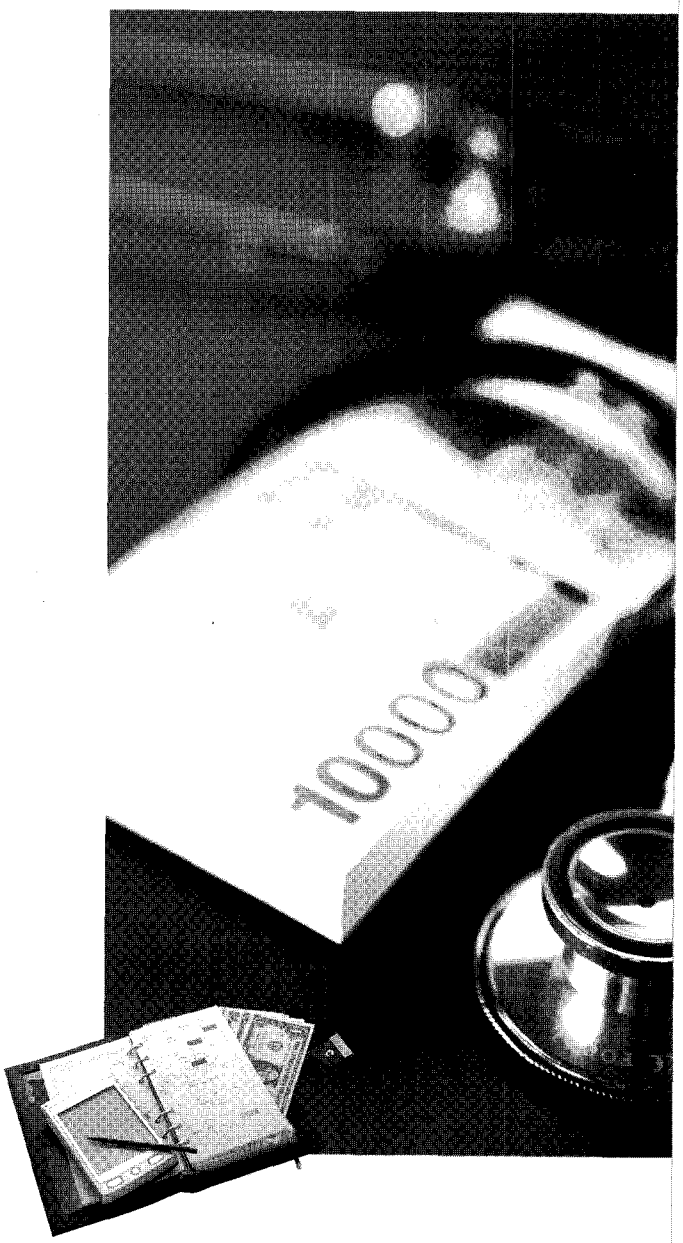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준비서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양계사업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2008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관련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하지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사업자의 경우 아래의 서류가 다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인지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① 영수증(계사 등 공사비내역, 면세유 구입내역, 전기요금, 전화요금, 기타소모품 영수증)
② 대출금이자 내역서(건별 대출금원장)
③ 매월 카드사용내역서(카드회사에서 받은 것)
④ 사료회사에서 지급받은 장려금 내역서
⑤ 국고보조금 내역서
⑥ 국민연금, 개인연금 납입증명서
⑦ 기부금 납입증명서
⑧ 급여대장(내역서) – 일용직 포함

1. 영수증 – 계사 등 공사비내역

2008년동안 공사비 또는 수리비 등이 있는 경우로서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미 1월 사업장현황신고에 포함하여 제출했다면 해당사항이 없으나 공사를 한 거래처가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자이거나 사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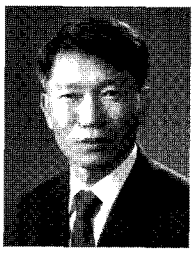

송 재 현 공인회계사/세무사
대현회계법인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및 석사 학위 취득
- 공인회계사, 세무사(1986년 취득)
- 안건회계법인 근무(1984년~1991년)
- 개인사무소 운영(1991년~2000년)
- 화인경영회계법인 송파지점 대표(2000년~2002년)
- 대현회계법인 대표이사(2002년~현재)

교부받지 못한 경우라면 최소한 영수증이나 확인서라도 수취하여 경비처리를 해야 한다. 물론 이런 공사가 양계업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경비인정을 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2. 대출금이자 내역서

양계업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하며 사업주 개인적 용도에 대출금은 해당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경우 이자금액은 사업 경비로써 인정받을 수 있다.

관련서류는 해당 대출을 해준 은행이나 농협에 문의를 하면 2008년 연간 대출 원리금 상한 내역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월별로 이자내역 등을 볼 수 있어 누락없이 경비처리할 수 있다.

3. 매월 카드사용내역서

요즘은 거의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므로 사업과 관련한 경비를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카드사에 연락해 연간 카드사용 내역서를 받아 해당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여 경비를 처리하는 것이 카드전표를 모아서 경비처리하는 것보다 누락위험이 없고 편리하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업 관련 경비란 사업과 관련해 사용한 경비만 해당하는 것이지 사업주의 개인적인 용도의 지출은 사업과 무관한 이상 경비 대상이 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한다.

4. 사료회사 등에게 지급받은 장려금 내역서

사료회사 또는 사료대리점 및 매입거래처와 관련하여 장려금 명목으로 현금 등을 수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항목들은 세금계산서 등과 무관한 항목이라 누락하기가 쉽다. 즉, 이런 명목으로 현금 등을 수취한 경우 사업의 수익에 해당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할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누락해서는 안되며, 특히 장려금을 지급한 거래처에서 이런 것들을 경비처리하기 때문에 누락시킬 수 없는 부분이다. 1년 전에 받은 부분은 기억도 잘 안나기 때문에 상대 거래처에 다시 한번 확인하여 수입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5. 국고보조금 내역서

축산업을 하다보면 여러 명목으로 보조금이 있는데 이러한 보조금도 사업의 영업외 수입에 해당되어 세금납부 대상이 되는 수입에 해당되므로 주의해야 하고 누락없이 신고해야 한다.

6. 국민연금 등 개인연금 납입증명서

개인사업자로서 근로자가 있어 급여신고를 하는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 대표자의 건강보험료, 즉 직장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도 경비처리가 되나 급여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장인 경우 대표자의 건강보험료는 경비처리가 되지 않는다. 법인과 달리 개인 사업자인 경우 대표자의 급여가 경비 처리되지 않는 맥락과 같다.

하지만 대표자의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국민연금은 소득공제가 되므로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면 1년치 납부 내역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챙겨야 하고, 일반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인 연금저축이나 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이 있다면 연금저축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7. 기부금 납입증명서

기부금이란 세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만 소득금액의 일정비율만큼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절이나 교회 등 종교단체 또한 포함되므로 기부한 단체에 문의하여 기부금 인정 대상단체인지 확인하여 관련 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8. 급여대장(내역서) - 일용직포함

사업장이 원래 당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로 인해 급여신고를 하고 있었다면 당해 세무대리인이 당연히 경비처리하고 있을 것이니 문제될 것이 없으나 급여신고를 하고 있지 못한 경우이거나 일용직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급여 계좌이체 내역을 통해 경비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세무대리인과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들은 1년을 돌이켜 세무대리인에게 영수증 등 증빙을 주지 못한 경비들이 있는지 다시 확인해 보시고 잘 챙기시길 바란다.

"5월에는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5월 1일부터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근로장려금(EITC)'의 지급신청이 시작된다. 수급요건을 갖춘 근로자들은 오는 5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9월 최대 12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 예상자 76만 명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들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근로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 등을 챙겨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해 문의하면 무료 신청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국세청에 소득자료(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근로자들 중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총소득 · 부양자녀 · 주택 · 재산)에 충족되는 근로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사업자(고용주)가 국세청에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근로자도 수급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급여 수령통장 사본 등 근로소득 증거자료를 첨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총소득 요건(부부합산 전년 소득 1,700만원 미만)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총소득을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소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모두 해야 한다.

■ 문의 : (02)398-6112~4 국세청 소득지원과
■ 홈페이지 : www.eitc.go.kr